

2.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환경부에서 하수도법 개정(2001. 3. 28)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(환경부 훈령 제 509호 : 2002. 1. 14)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준공시 구비서류에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·중·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함(안 제5조제1항).
- 기타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·개축·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비용으로 구체화 함(안 제8조제6호).
-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 산정방법,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,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).
-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2항).

□ 검토내용

- 동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(2001. 3. 28)과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의 개정(환경부 훈령 제509호 2002. 1. 14)에 따라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적합성에 문제가 없고
- 내용면에서도 배수설비 준공 검사시 구비서류에 배수설비 접속 부분의 설치공사 전·중·후 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

-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부과에 관한 사항도 매년 2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 등의 미납자에 대한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기한내 납부토록 유도하고 기한내의 납부자와의 형평을 달리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